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비수급 입소자 지원

1 기 본 현 황

□ 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	
사업기간	□연례반복, ☑사업기간 2023.01 ~ 2023.12		
사업내용	○ 보호시설 비수급 입소자에 대한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		
사업비 (당해년도)	50,000천원	〔국비〕	〔시비〕50,000천원
	기타 (예산 외) 〔구비〕		〔기타〕

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여성가족정책실	가족다문화담당관	천주환 2133-8680	최정열 2133-8696	류가영 2133-8697

※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2 예 산 설 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22예산액 (A)	2023예산액 (B)	증감 (B-A)	
				(B-A)*100/A
계	(x-) 0	(x-) 50,000	(x-) 50,000	(x-) 100
사회복지사업보조	(x-) 0	(x-) 50,000	(x-) 50,000	(x-) 100

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23년 예산내역		
사회복지사업보조	○ 보호시설 입소자 중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 25,000,000원	=	25,000천원

과목구분	2023년 예산내역
	○ 보호시설 입소자 중 비수급자 의료비 지원 = 25,000천원 25,000,000원

3 사 업 설 명

□ 사업목적

○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및 동반 구성원의 생활안정

○ 신체적,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

□ 사업근거

○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(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)

○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(치료보호)

□ 사업내용

○ 사업기간 : 2023. 1. ~ 12.

○ 지원대상 : 보호시설 입소자 중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가 아닌 자(미등록 포함)

- 쉼터 4개소, 그룹홈 2개소, 자활지원센터 1개소 입소자 대상

○ 추진방법 : 서울시→자치구→시설 교부하여 사업 운영

○ 사업의 주요내용 : 보호시설 비수급자에 대한 생계비, 의료비 지원

□ 추진경위

○ 2023년 신규편성

□ 2023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50,000	
계획수립	2023.01~2023.02	0	세부 지원계획 수립
사업운영	2023.01~2023.12	50,000	사업비 재배정
결과보고 및 정산	2024.01~2024.03	0	실적 보고 및 정산

4 사 업 효 과

□ **최근 3년 추진실적**

□ **향후 기대효과**

○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그 동반자녀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